

화성도시공사 2026년 제2회 전문특수직(코치)
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

「화성도시공사 2026년 제2회 전문특수직(코치) 공개채용」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
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8일
화성도시공사사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구 분	채용구분	직급(직위)	예정인원	채용방법		임용예정일
				1차	2차	
합 계		1명				
경력 공개경쟁	전문 특수직	탁구운영부 코치	1명	서류 전형	면접 전형	2026.11.중

- ☐ 보 수 : 화성도시공사 관련규정에 의함(지원자의 해당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)
※ 전문특수직 코치 보수(세전) 상한액 금70,000천원 ~ 보수 하한액 45,000천원
※ 복리후생, 기타 수당 등의 사항은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
- ☐ 전문특수직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(최초 계약기간 근무 후 지도자 평가 등 결과를 토대로 1년 단위 계약연장 가능)
- ☐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 09:00 ~ 18:00 (야간근무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가능)
※ 임용일은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음(최대 1년)

가. 1차 전형 : 서류전형 (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)
- 관련분야 경력 등에 대한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

나. 2차 전형 : 면접전형
- 성실성·의지력, 의사발표, 기타발전가능성, 건강(정신·신체) 상태,
용모·예의·품행 평가(개별면접)
-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“보통(70점)” 이상인자 선발
※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“미흡” 으로 평정 시 불합격

다. 최종합격자 결정 :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,
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- 경력공채 : 서류전형 50% 및 면접전형 50%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
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 결정
-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에 따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조회와
-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관련법령에 근거한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,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 미보유시 최종합격자 임용 확정

라. 예비합격자 결정

-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, 예비합격자는 최대 3명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.
-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순으로 함(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)

2.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

가. 접수기간 : [2026.10.8.\(목\) 10:00 ~ 2026.10.19.\(월\) 17:00까지](#)

나. 접수방법 : 화성도시공사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

- 주소창 입력 <https://hu.recruiter.co.kr/career/home> 또는 [바로가기](#) 클릭

다. 시험일정 :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,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장소는 별도 통보

원서접수		2026.10.08.(목) 10:00 ~ 2026.10.19.(월) 17:00
1차전형	서류심사	2026.10.20.(화)
	합격자 발표	2026.10.21.(수)
2차전형	면접전형	2026.10.23.(금)
최종합격자 발표		2026.10.30.(금)
임용예정		2026. 11. 중 ※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(최대 1년)

라.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1)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,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.
- 2) 경력 등 제출서류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, 제출된 증명서에 의하여 심사됩니다.

- 3) 지원 자격요건 증빙서류(스포츠 지도사, 지도자실적증명서 등)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자료에 의하며, 서류 미제출 및 암호화에 따른 열람불가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4) 응시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.

3. 응시자격

가. 응시연령

-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공사 정년(만60세) 범위 이내인 자

나. 거 주 지 : 제한 없음

다. 결격사유 :

-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사 인사규정(공통사항)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-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지도자 또는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
공통사항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9.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1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라. 자격요건 (직무분야 세부 자격요건 하단 참조)

구 분	직위	자 격 요 건
전문 특수직	공통사항	[아래 항목 모두 충족] ○ 「공사 인사규정」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○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(대한탁구협회)의 지도자 등록 또는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	코치	[아래 항목 모두 충족] ○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○ 대한탁구협회 산하 연맹 대회입상(지도자) ○ 대학교 이상 선수경력 1년 이상

※ 경력 기간 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

마. 세부 자격요건(직무 관련분야, 자격)

구 분	관련 분야(관련경력 등)	관련 자격
전문특수직 (코치)	○ 우수선수의 발굴, 육성, 경기대회 참가 등 관련 사항 ○ 운동경기단 선수 훈련 계획 수립 등 관련 사항	[필수자격, 아래 항목 모두 충족] · 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· 대한탁구협회 산하 연맹 대회 입상(지도자) · 대학교 이상 선수경력 1년 이상

4.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응시원서,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	원서접수 시 전산기재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등 동의서	채용접수 사이트 동의
3	스포츠지도자 자격증 ※ (코치)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에 한하며 필수 자격사항임 ※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	스캔 파일 업로드
4	지도자실적증명서(대한탁구협회 발급분에 한함) ※ 해당자 및 대한탁구협회 발급 분에 한하며,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	스캔 파일 업로드
5	선수등록확인서(대한탁구협회 발급분에 한함, 해당자에 한함) ※ 해당자 및 대한탁구협회 발급 분에 한하며,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	스캔 파일 업로드
6	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일체(해당자에 한함) ※ 업무분야 등 세부내역 기재 필수, 미기재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※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(제출서류 7) ※ 증명서 내 세부자격요건 반드시 기재, 경력증명서 내 단순 '코치' 또는 '지도자' 기재 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음 ※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 건만 인정	스캔 파일 업로드
7	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해당기간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- 해당자에 한하며, [제출서류 6]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 - 관련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	스캔 파일 업로드

연번	제출서류	비고
8	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※ 제출처를 '화성도시공사' 로 공고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	스캔 파일 업로드
9	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	1365포털 또는 VMS포털에서 발급받은 스캔 파일 업로드

※ 임용등록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

※ 관련 제출서류 등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하며,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

※ [제출서류6] 경력증명서(또는 재직증명서) 제출 시 [제출서류7]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사항으로 **두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제출 시,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.**

5. 채용서류의 반환 파기

가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, 온라인 접수 채용서류에 반환 의무가 없으며 접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.

6.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

가.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

- 가산점 비율은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비율에 따라 적용함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 5% 또는 10%씩 가산
-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, 각 전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합격(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)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	매과목 4할 이상 일 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각각5%, 10%씩 가산	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

※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

※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
나. 우수자원봉사자 가점

-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차등 부여

구 분	금장	은장	동장	해바라기	기타
자격기준	기간3년이상 누적 300시간 이상	기간3년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	기간3년이상 누적 100시간 이상	기간3년이상 누적 30시간 이상	이하
배 점	5	4	3	2	1

7. 기타사항

- 가.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, 출생년도 (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: [예시] **0708 -*****), 학교명,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* 단,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
- 나.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.
- 다.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)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시 임용 될 수 없습니다.
- 라.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 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마. 응시원서상의 각종 기재착오, 누락, 자격미달 응시, 제출서류 암호화에 따른 열람불가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.
- 바.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.
- 사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아.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자.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(www.hu.or.kr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차.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, 채용 시 자격제한,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카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1조(임원의 겸직 제한)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의 겸직을 금합니다.
- 타. 채용관련 비리, 부정행위,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(합격자 발표일 포함)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, 이메일(recruit1@hsuco.or.kr)으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.
- 파.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[붙임1]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인사교육부(031-8012-776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붙임1)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

○ 편의지원 항목

장애유형 및 등급			편의지원 항목
지체 장애	상지	공 통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		장애정도가 심한 자	공통편의지원, 답안지 대필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공통 편의지원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자 / 심하지 않은 자	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뇌병변 장애	공 통	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	장애정도가 심한 자		공통 편의지원, 답안지 대필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공통 편의지원
시각 장애	공 통	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	장애정도가 심한 자		공통 편의지원,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공통 편의지원
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 / 심하지 않은 자		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	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	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	과민성대장증후군, 과민성방광증후군, 신장, 심장, 장루, 요루 장애 등		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기타	임산부		시험 중 화장실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 (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)

○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

구 분	주 요 내 용
대 상	·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·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기간 및 방법	· 기 간 － 편의지원 신청 :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－ 관련서류 제출 :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· 방 법 －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,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 (채용홈페이지 첨부파일 제출) － 증빙서류(의사 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인 증명서 등)는 스캔하여 입사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(등록)
유의사항	·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· 의사진단(소견)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 ※ 단,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· 의사진단(소견)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. · 임신부의 경우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예시) 상기인은 임신 ()주, 필기시험 예정일(0000.00.00)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,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·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· 확대문제지 등 : 확대문제지(118%, 150%), 축소문제지(82%), 확대답안지 (118%, 150%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) ·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,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_입사지원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지원직종		업무직	시험구분	☐ 필기전형 ☐ 인적성전형
지원업무분야			출생월일	
성명			전화번호 (보호자는 필요시 기재)	응시자 : 보호자 :
주소		□□□□□		
구분		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☐ 임신부 ☐ 기타 일시적 장애 등 <상세기술>		
첨부서류		☐ 장애인등록증 ☐ 장애인복지카드 ☐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및 등급 확인 서류 ☐ 의사 진단(소견)서		
편의 제공 요청 사항	문제지 (택1)	☐ 해당 없음 ☐ 확대문제지 (☐ 118% ☐ 150%) ☐ 축소문제지 (☐ 82%)		
	답안지 (택1)	☐ 해당 없음 ☐ 대필 ☐ 확대답안지 (☐ 118% ☐ 150%) ☐ 아라비아 숫자 표기		
	시험실	☐ 해당 없음 ☐ 별도 시험실		
	장애인 보조기구 (본인지참)	☐ 해당 없음 ☐ 보조기구 명칭() ☐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(☐ 해당 없음 ☐ 필요사항 :)		
	기타	☐ 해당 없음 ☐ 화장실 허용 ☐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☐ 인성검사 시 필요사항 () ☐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		
※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
화성도시공사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. 20 . . . 성명(대리인) (서명 또는 날인) 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				

--